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

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도934 판결



### 사안의 개요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장이 업체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해도 원장에게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법인에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활

동비는 특별활동 수행 업체에 직접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그 특별활동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면 그 돈의 처분권자는 업체가 원장에게 리베이트로 돈을 주더라도 횡령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이 유입니다.

### 대법원 판결요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는 법인의 소유**가 되고 법인이 이 돈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원장이 그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

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원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업무상 횡령죄 인정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